

## 서산군모자복지위원회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

서산군모자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조 (위원회의구성) 제2항중 “가정복지

과장이 되며” 를 “위원중에서 호선하며” 로 하고

제 8조 (위원의 임기) 제1항중 “그 재직” 을 “그 직위에 재직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2조 (위원회의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정복지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 2, 3호 (생략)</p> <p>제 8조 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 2조 (위원의 구성) ①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.....</p> <p>.....위원중에서 호선하며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 2, 3호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8조 (위원의 임기) ①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그 직위에 재직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